

제311회 임시회
2012. 6. 22(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6. 22(금)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권기수 의원 외 6인

나. 발의일자 : 2012년 6월 4일

다. 회부일자 : 2012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6월 13일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권기수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저감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택화재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지사, 시장·군수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시책을 추진(안 제2조)
- 주택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및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3조)
- 시장·군수는 주택의 신·개축 등 허가·신고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4조)
-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설치방법을 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전문위원 : 김 명 회)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 도지사, 시장·군수가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시장·군수는 주택의 신축·개축 등 허가·신고시에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안내하고,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을 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업무주관 부서인 소방본부(방호구조과)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 입법예고(2012.5.15~6.3)시 충청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로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외에도, 노인이 홀로 거주하거나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 소년소녀가장 또는 한부모가정 주택에도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 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설치토록 하고, 기타 대상자는 추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금번 조례안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
- 조문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간결하게 발의되었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주택에 법 제8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주택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 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도지사, 시장·군수가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 허가·신고 시의 소방시설 설치 안내)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2.5kg 이상 분말소화기 등)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적용례는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법령 발췌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 2012.2.5]

부칙<법률 제11037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건축법 제2조 제2항

-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단독주택
 - 2.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2항의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 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시책에 의해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소년소녀가장 주택
- 한부모 가정 주택
-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나. 도지사, 시장·군수는 시책에 의해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용소요 발생 (안 제2조 및 제3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제정(안)의 시행일을 2012. 6월로 하여 추계기간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으로 함
- 소화기는 가구당 1대(능력단위 2단위 수동식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구당 2개 보급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31,982가구 이지만 아파트외 거주비율을 60% 적용하여 기초 소방시설 보급 지원대상을 19,413가구로 추계하였음.
-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 보급 지원대상 19,413가구를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 세출예산은 중기 소비자물가상승률 감안,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였음

나.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한 가구당 기초소방시설(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2개) 2종 3점을 보급 지원하면 총 19,413 가구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358,910천원 비용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참 고】 기초소방시설 소요비용 산출근거 : 1 가구당 소요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예상단가	가구당 보급개수	가구당 소요비용
소화기	대	20(VAT포함)	1	20
단독경보형 감지기	개	25(VAT포함)	2	50
계			3	70

【참 고】 재정지원 주택 소방시설 설치 소요금액

구 분	가구수	가구당 소요비용(천원)	소요금액(천원)
소화기 및 단독경보감지기	19,413	70	1,358,910

※ 우리 도 아파트 외 거주비율 46.6% 이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60% 적용하였으며, 소년
소녀가장은
100% 적용함.

【참 고】 연도별 재정지원 추진계획

구 분	1차년도 (2013)	2차년도 (2014)	3차년도 (2015)	4차년도 (2016)	계
가구수	4,863	4,850	4,850	4,850	19,413
소요금액(천원)	340,410	339,500	339,500	339,500	1,358,910

【참 고】 연도별 보급·지원 가구수

구 분	1차년도 (2013)	2차년도 (2014)	3차년도 (2015)	4차년도 (2016)	계
보급 가구수	4,863	4,850	4,850	4,850	19,413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1,837	1,835	1,835	1,835	7,342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1,366	1,363	1,363	1,363	5,455
소년,소녀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	140	138	138	138	554
한부모 가정 주택	477	474	474	474	1,899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1,043	1,040	1,040	1,040	4,163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일반운영비)

구 분	1차년도 (2013)	2차년도 (2014)	3차년도 (2015)	4차년도 (2016)	계
계(천원)	340,410	339,500	339,500	339,500	1,358,910

○ 연도별 비용 추계표(단위: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계
세입(b)	0	0	0	0	0
총비용(a-b)	340,410	339,500	339,500	339,500	1,358,910
재원조달	340,410	339,500	339,500	339,500	1,358,910
의존재원 도비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북도의회 권 기 수 의원
연락처	사무실 : 043) 220 - 5131 E-mail : kks4726@hanmail.net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 조치내용

□ 주요제출의견

조례안	의견안	의견제출사유
<p>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 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도지사, 시장·군수가 현지역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p>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 허가·신고 시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지도·안내하여야 한다.</p>	<p>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 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u>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u> 3. <u>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u> 4. <u>소년소녀가장 또는 한부모가정 주택</u> 5. 도지사, 시장·군수가 현지역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p>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 허가·신고 시의 소방시설 설치 <u>안내</u>)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지도·안내하여야 한다.</p>	<p>지원대상 범위 확대 필요</p> <p>조문 제목의 “확인”은 설치 완료된 상태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잘못 판단될 수 있어, 조문 내용에 맞추어 “<u>안내</u>”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p>

□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도(건축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의견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제4조 조문 제목의 명칭 변경을 요청한 사항임
-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의 확대는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설치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을 받는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또는 한부모주택으로 한정하여 우선 지원토록 하고
 - 「노인복지법」상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한부모가정의 주택에 대한 확대지원은 추후 1단계 사업시행 결과 및 도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확대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미반영함
- 기타 제4조의 제명 중 “주택.....설치 **확인**”을 “.....**안내**”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반영하였음